

2026년도 제2차 「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」 수요조사 안내

2026. 7.



I 신청 단체

□ 동포 사회에서 활동하는 각종 동포(직능)단체

- ※ 특정 정파의 이념 또는 정책을 옹호·지지·전파하는 성격의 단체 및 사업은 지원 불가하며 추후 정치적 편향 등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
- ※ 일본 지역은 재일민단 지원 수요 조사 별도 시행으로 ▲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, ▲공공외교 中 코리아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만 신청 가능

II 신청 사업

□ '26년 8월 ~ '26년 12월 재외동포단체가 거주국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

※ 1차 수요 조사 집행 잔액(총예산의 약 10% 내외) 활용

○ 아래 중점 사업 우선 지원 예정

중점 사업		지원항목
동포사회 DB 구축	○ 동포 기업 DB 구축 사업	⇒ 경제단체 활동 지원
	○ 동포 사회 네트워크 조사 사업	
한인의 날 기념	○ 동포단체가 동포 사회 결집 계기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'한인의 날' 기념행사	⇒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지원
	○ 거주국 정부 공식 제정 '한인의 날' 등 기념행사	
		⇒ 공공외교 활동 지원

□ 사업 신청 시에는 단체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 항목에 신청 요망

- ※ (예)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: 한인회, 체육회, 여성회, 기타 직능단체 등
- 차세대 단체 활동 : 이민 2세대 이상 혹은 주로 25세부터 45세까지 동포들로 구성된 단체

지원항목	지원 사업 및 분야
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지원	[교류증진 분야]
	○ (중점 사업) 동포 사회 네트워크 조사 사업 ※ 현지 거주국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유의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후 계획서 제출 ※ 사업 선정 시 관련 조사 양식 별도 배포 예정 - (동포단체 조직화) 동포단체 조직 체계 정비에 위한 회원 명부 현행화(실제 활동 인원 중심 회원 정비) 및 DB 구축, 단체 내 신·구세대 소통 활성화 및 조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

지원항목	지원 사업 및 분야
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지원	- (지역 동포 단체·인물 간 교류 강화) △지역 사회 내 활동 중인 분야별·직능별 동포 단체 및 인물 발굴·조사, △지역 내 분야별 동포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체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 행사 개최 ※ 사업신청서에는 조사 △대상(동포 단체, 인물, 단체 회원 등), △항목, △방법, △기간, △자료 관리 방안 및 보안 조치 등 내용을 포함 ○ (중점 사업) 동포 사회 화합, 소통증진을 위한 ‘한인의 날’ 기념행사 ※ 거주국 현지 정부 공식 제정 ‘한인의 날’ 기념 행사는 ‘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’을 통해 신청 - 현지 실정, 한인 이민 역사 등 거주국 특색을 반영한 광복절, 추석, 한인의 날(10.5), 한인 주간 등 동포 사회 결집 행사 ※ 연말 송년회 등 △친목성 사업, △단순 명절 행사는 제외 ○ 미래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신·구세대 간 소통 및 협업을 위한 사업 - 세대 간 소통 증진, 주류사회 진출 인사 등과의 네트워크 멘토링 사업 ○ 차세대 동포의 동포사회 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 - 차세대 동포가 기획·참여하는 문화·체육 행사, 봉사활동 등 - 차세대 동포 대상 경제·취업·경력개발 세미나, 커리어 네트워킹 [권익신장 분야] ○ 동포 지위 향상 사업 - 이민·노동·교육·사회보장 등 거주국 법,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세미나 ○ 취약·소외 동포 권익 보호 사업 - 고려인·조선족·난민·생계곤란 동포 대상 상담·법률 지원, 긴급 지원 - 다문화가정, 청년(학교밖, 실직 등), 여성, 고령 동포 등 권익 보호 프로그램
재외동포 차세대단체 활동 지원	○ 차세대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* 차세대동포가 자발적으로 조직하고, 차세대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* 여타 단체(한인회 등)의 “차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육성사업” 제외 - 차세대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, 멘토링 사업 ※ 차세대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, 총 사업 소요액의 80% 이내 지원 가능
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지원	○ (중점 사업) 동포 기업 DB 구축 사업 - (동포기업 DB 조사) 거주국 재외동포 기업 현황 조사 및 기업정보 현행화를 통해 지역(소재)·업종·분야·매출 등 DB 구축 ※ 사업신청서에 △조사 대상, △항목, △방법, △기간 등을 포함한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, 거주국 관련 법령에 유의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후 계획서 제출 ※ 사업 선정 시 관련 양식 별도 배포 예정
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	○ (중점 사업) 거주국 정부 공식 제정 ‘한인의 날’ 등 다수 한인 단체가 결집하는 기념일 행사 ※ 지역 한인회 간 공동 기획·참여 등 협력 사업 우선 지원 ○ 거주국 맞춤형 생활밀착형 공공외교 사업 -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포들의 문화교류·재능기부·봉사 사업

지원항목	지원 사업 및 분야
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	※ △현지 청소년 대상 진로·학업 멘토링, △현지 시민의 관심사를 고려한 세미나(학술경제 등), △요리·학업·기술 등 재능기부, △취약계층 대상 봉사 및 한식·물품 나눔 행사 등을 포함하며, 특히 지속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가점 ○ 거주국 정부, 타민족 커뮤니티 등과의 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○ 한인사회 치안 강화 - 현지 경찰 초청 안전 세미나, 간담회 개최 등 ○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 - 한인 정치인(차세대) 육성 및 네트워크 활동* 지원 * 현지 친한 정치인, 기업인, 언론인, 학자 등을 초청하여 한국과 거주국과의 민간 차원의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행사 ※ 미국 지역 동포단체는 상기 분야로 지원 불가 ‘정책 공공외교 활동(정치 연관 활동)’은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(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)과 관련해 지원 불가하며, 관련 사업은 공관 주도로 단체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‘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’을 통해 지원 ○ 코리아타운 환경개선 사업 - 표지판 및 상징물 설치사업, 거리정비 및 치안개선 사업(가로등, CCTV 설치 사업) ※ 코리아타운 발전을 위한 주재국 관할 관청과의 공동 협력 사업도 지원 가능
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[참고2] 참조	○ 재외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의 구심점인 한인회관 등의 시설 개보수 지원 ※ 정체성 함양을 위한 차세대 교육 시설 등이 포함된 다목적 회관 및 이민사적 의미가 있거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,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- 개보수 : 사용 중인 건물 시설 개선, 낙후·노후시설 정비 등 - 증·개축 : 기존 건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증축 및 개축 ※ 금반 수요조사는 개·보수, 증·개축만 지원

□ △문화예술단체, △언론단체, △입양 동포 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금년도 예산 소진으로 추가 수요 조사 미 실시

□ ‘한글학교 맞춤형 지원’ 사업은 추후 별도 수요 조사 실시 예정

III 지원 규모 및 사업 선정 기준

□ 지원 규모 : 신청 사업 총 소요액의 최대 50~80% 이내

○ 집행 잔액(전체 대비 약 10%)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 위주로 보조율 상향 지원

* 단, ‘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사업’은 신청 금액 무관 최대 80% 지원 가능

- 사업별 최종 지원 금액은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

< 세부 기준 안내 >

- 총사업비 USD 5,000 이하 → 보조율 80% 적용(보조:자부담=4:1) / 최대 USD 4,000 보조금 신청 가능
※ 최대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산식 = (총사업비)×0.8
- 총사업비 USD 5,000 초과 → USD 5,000까지는 보조율 80% 적용(보조:자부담=4:1)(동일),
USD 5,000을 초과하는 차액에는 자부담률 50% 적용(보조:자부담=1:1)
※ 최대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산식 = 5,000×0.8 + (총사업비-5,000)×0.5 ⇨ (총사업비)×0.5 + 1,500

(예시)

총 사업비	최대 신청(지원) 가능 금액	최소 자부담	보조율
USD 4,000	USD 3,200	USD 800	80%
USD 5,000	USD 4,000	USD 1,000	80%
USD 6,000	USD 4,500	USD 1,500	75%
USD 10,000	USD 6,500	USD 3,500	65%
USD 20,000	USD 11,500	USD 8,500	57%
USD 50,000	USD 26,500	USD 23,500	53%

□ 아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사업 선정

-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및 중점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
- 사업의 타당성 및 동포사회 및 현지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
- 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단체 자조 노력
- 1개 단체에서 다수 사업 신청 시, 중점 지원사업 우선 검토
- 관할 재외공관 의견 등

⇨ 지원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 사업은 중점 지원사업 부합 여부, 단체의 자조 노력(예산 조달 능력)을 우선 고려

⇨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계속 사업은 사업 성과, 결과 보고 충실도,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속 지원 여부 결정

※ 이전 사업 결과를 반영, 금년도 사업에서 강조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업 계획서에 반영

※ 매년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IV 지원 불가 사업

□ (공통) 지원 불가 사항

-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실적이 미비한 경우
 - *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이 미비하거나 검증 불가능한 경우, 지원금 회수
- 재외동포청의 승인 없이 당초 사업을 변경, 이월 시행한 이력이 있는 단체의 사업
-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하지 않고, 이메일·우편 등을 통해 개별 신청한 사업
 - *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거주국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, 온라인 접수 시스템 외 방법으로 지원 불가(필요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수요 조사 기간 마감 이전에 별도 사전협의 必)
-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
- 사업(행사) 종료 이후 지원 신청한 경우
- 한국 정부(중앙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)로부터 동일 사업에 지원 받는 경우(보조금 중복 수급 불가)
-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임·회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요청 건

구 분	지원금 사용불가 항목
인건비	- 사업(행사)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 <u>단체 관계자 인건비</u> 집행 불가
운영비	- <u>사업(행사)과 무관한 사무용품 구입비, 식비, 간식비</u> 등 집행 불가 - 수선비, 공과금, 사무실 임차료, 시설장비 및 차량의 유지비 등 집행 불가 - <u>장비구입, 시설비, 전신전화, 전산장비, 정보화사업</u> 등 집행 불가
기타	- 사전 승인받지 않은 장학금, 시상금 및 기부금(품) 지급 불가 - <u>기프트카드, 상품권, 기프트콘 등 유가증권 구입 및 배포 불가</u> - <u>소명되지 않은 여비, 국외출장여비</u> , 연구개발비, 일반용역비 집행 불가 * 여비는 단체 관계자의 경비로는 지출 불가하며, 초청 대상자의 여비 지급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별도 소명해야 함. 단, 연구단체는 연구개발비 또는 일반 용역비 집행 가능

- 단체 자조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업

- 소식지, 주소록·달력 제작 등
- 단체 회원 간 단순 친목 도모 행사 및 연말연시 모임 등
- 소수 개인의 상업 활동 및 영리 목적의 사업
- 종교활동 또는 국내 정치 관련 사업
- 지원 요청액이 USD1,500 미만인 소액사업 등

□ (사업별) 지원 불가 사항

사업명	내 용
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	○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위한 사업
한인회관 등 건립지원	○ 개인명의(개인소유)로 진행되는 사업 ○ 채무상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 ○ 자체마련 재원이 총사업비의 20% 미만인 사업

V 기 타

□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은 「보조금법」에 따라 연간 총합 1천만원 이상 지원 단체는 보조금 정보 공시 의무

※ 공시 대상 단체사업 등은 연말에 일괄 안내 예정

□ 당초 사업계획 대비 일시, 장소 단순 변경 이외 사업 예산 및 내용 변경이 있을 시,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시 '26년 양식에 의거 변경내용에 대한 상세 기술 필수

※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양식은 코리아넷 별도 게시

VI 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 ※【참고 1】 참조

□ 신청 절차 및 일정 ※ 한국시간 기준

재외동포단체 '26.7.16.(목)~7.31.(금)	▶	재외공관 '26.7.16.(목)~8.9.(일)	▶	재외동포청 '26.8.10.(월)~
서류 작성 및 제출		서류 검토 및 공관 의견 (우선순위 포함) 작성 후 회신		제출서류 검토(공관의견 포함) 및 심의

※ 유의사항

- ① 신청 기간 종료 이후에는 시스템 마감으로 추가 신청 및 수정보완 불가, 반드시 신청서 작성(저장) 후 7. 31.(금) 24:00까지 제출 완료 요망
- ②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시스템 혼잡이 예상되오니, 미리 여유를 두고 사전에 신청서 제출 권장

□ 신청 방법 : 온라인 지원 신청 시스템(www.korean.net) 활용 제출

<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>

1. (회원가입) www.korean.net 접속 → 개인회원가입 → 단체회원가입 → 재외동포청 승인 (2일 이내 메일 통보)
기 가입단체는 사용 중인 ID/PW 사용
2. (신청 절차) 코리아넷 접속 → 단체 ID/PW 로그인 → 재외동포 지원 → 재외동포 사업 → 사업 신청 →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→ 저장 및 제출(제출 기한 내 수정 가능하나,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)

* 상세 내용은 붙임_온라인시스템 이용 방법(단체) 참조

* 단체 회원 가입 이후 가입 승인까지 통상 2~3일 소요, 수요 조사 마감 4~5일 전에 회원 가입 신청 완료 必

*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 문의 : korean_master@korean.net (평일, 한국시간 09:00 ~ 18:00)

□ 제출 서류

○ (필수) 공통 제출 서류 (온라인 양식 입력)

온라인 양식에 입력	- 사업 신청서
	- 사업 계획서
	- 수지예산서
	- 단체현황조사서 (코리아넷 가입 정보로 자동 생성, 수정 필요시 마이페이지에서 변경)
붙임파일 첨부하여 제출	- 정관
	- 단체소개서(연혁, 임원현황, 사업 및 활동 실적 등) ※ 필요시 【참고 3】 단체소개서 양식 활용
	- 법인(단체) 등록증 ※ 주재국 정부 등록단체인 경우 제출

- 기타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(요청 시 제출)

○ (추가) 사업별 제출 서류

사업명	추가 제출 서류
한인회관 등 건립지원	○ 공사비 산정 내역서(견적서) ○ 현재 보유액 관련 증빙자료(은행 잔고 증명서(필수), 거주국 정부 보조금 교부 확인서 등) ○ 부족액 조달 계획 관련 증빙서류(기부약정서 등) * 구두 기부 약정 내용 등 실행 여부가 불분명한 계획은 불인정 ○ 인허가 및 계약 관련 서류(계약서, 인·허가 관련 서류, 감정평가서 등) * 단체 명의로 등록된 서류만 가능, 개인 명의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소명 자료 제출 필요 ○ 단체 정관 ○ 사업추진 계획서(공정표 등 세부추진 일정 포함) ○ 건물 도면 및 사진(내외부, 주변) 및 대상 건물 시가지도(한인사회 주거지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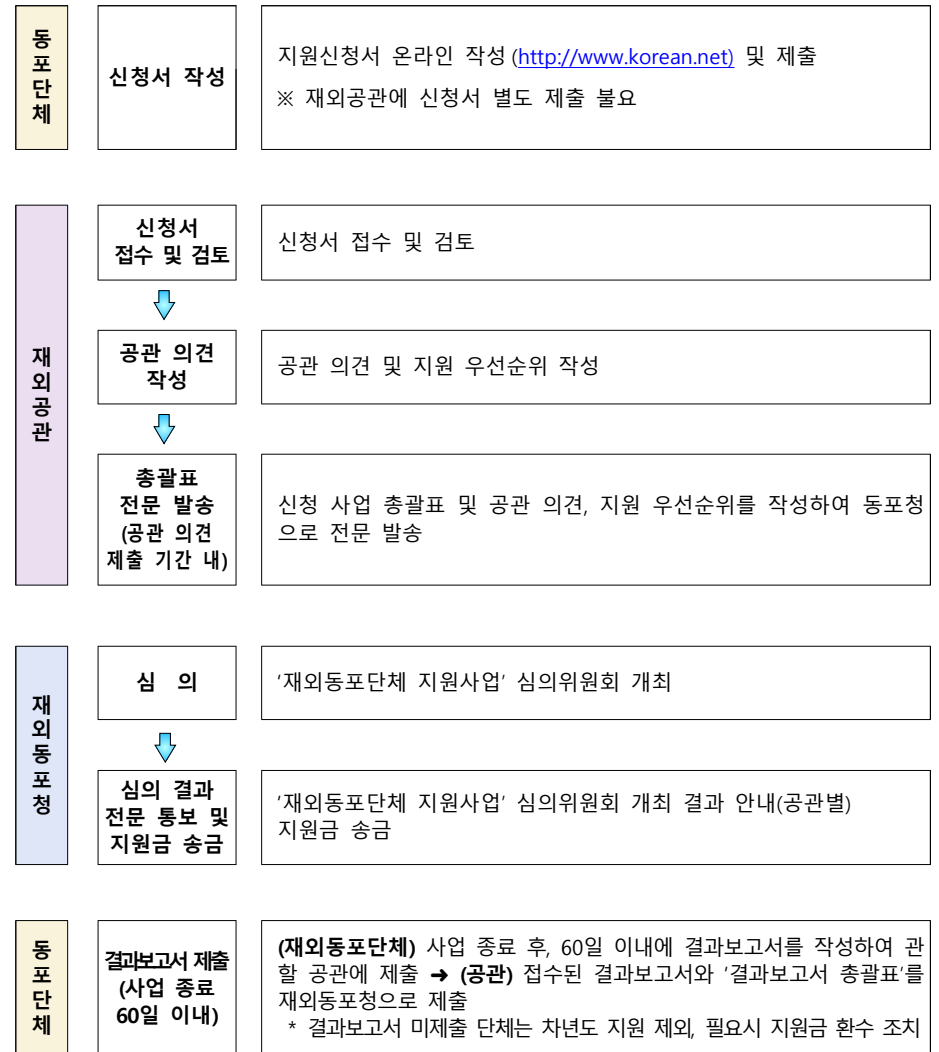
□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

- 제출 이후 마이페이지 '사업신청조회'에서 반드시 **최종 접수 상태를 확인**(임시저장 상태는 제출 미인정)
 - 다수의 사업은 **각 건별로 신청**
※ 1개 단체가 다수의 사업을 지원 신청할 경우, 반드시 사업건 별로 작성
 - 지원신청 시 사업목적, 기대 효과 외 **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 필요성***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
- * 동 사업을 통한 '동포 커뮤니티 발전 가능성', '사업의 지속가능성' 등

VII 사업별 문의처

사업명	문의처	
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(재외동포협력총괄과)	총괄 캐나다 대양주	032-585-3197 / lsyeon24@korea.kr
	유럽	032-585-3201 / ryusn@korea.kr
	중국	032-585-3198 / ddangbun@korea.kr
	미국	032-585-3205 / sjcho9003@korea.kr
	아시아	032-585-3203 / kkmin12@korea.kr
	아중동	032-585-3229 / yjyoon23@korea.kr
	중남미	032-585-3206 / feliz02@korea.kr
	러시아 CIS	032-585-3228 / yubin3442@korea.kr
차세대 단체 활동 지원 (차세대동포과)	032-585-3218 / hyhr33@korea.kr	
경제단체 활동 지원 (동포경제지원과)	032-585-3223 / shmoon22@korea.kr	
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(재외동포협력총괄과)	032-585-3201 / ryusn@korea.kr	
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(재외동포협력총괄과)	032-585-3229 / yjyoon23@korea.kr	

참고 1 상세 지원 신청 절차



□ 유의 사항

- 단체 명의로 진행되는 사업만 지원신청 가능(개인 명의 사업 불가)
- 재외동포청은 지원 심의 전·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사업 진척이 부진한 경우, 지원을 결정하였더라도 추후 지원 취소 가능
- 지원금 수령 후 결과보고 시 건물 임의 처분 방지 조항(“건물에 대한 재산권 처분 결정 시, 관할공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”)을 단체운영 정관에 반드시 반영하여 함께 제출
 - ※ 필요시 정관 개정 요망
- 지원금은 사업 진척도를 평가, 사업 완료가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는 시점(사업추진 마지막 단계)에 단체에 전달되므로, 신청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 확보 계획 수립 요망

단체(법인) 소개서

단체명	
설립목적	
연혁	※ 별첨 가능
인력현황	○ 대표자 성명 : (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) ○ 직원 수 : * 종사자 수(회원 수, 상근 직원 수를 구분하여 기재)
임원 현황	※ 별첨 가능
주요사업 및 운영실적	※ 별첨 가능
2026년 주요사업 계획	※ 별첨 가능